조선충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제729호(號) 1929년(昭和 4) 6월 8일 목요일

○ 고 시(告示)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204호(號)

1927(昭和 2)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28호(號)(조선국유철도화물운송규칙[朝鮮國有鐵道貨物運 送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1929(昭和 4)년 6월 8일 조선총독(朝鮮總督) 야마나시 한조(山梨半造)

제4조(條) 말미(末尾)에 아래[左]와 같이 추가(追加)함.

(주[註] 1) 「광궤선(廣軌線)」이란 궤간(軌間) 「4피트(feet·呎) 8인치(inch·吋) 반」의 선 (線)을 말함.

제7조(條) 중(中) 품종란(品種欄) 「백미(白米)」 및 「대두(大豆)」의 아래[下]에 각「(조선산 [朝鮮産]에 한[限]함)」을 추가(追加)하고 「시멘트(cement)」의 항(項)을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품 종	(品種)	포	장(包裝)	1개(箇)의	근량(斤量)
시멘트(cement)	170kg(瓩)	나무통	들이[樽入]		301근(斤)
	85kg(瓩)	동(同)			153근(斤)
	50kg(瓩)	자루들	이[袋 入]		84.5근(斤)

제12조(條)제2항(項)제4호(號) 중(中)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을 발행(發行)한 경우를 제 (除)함」을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을 청구(請求)한 경우를 제(除)함」으로 개정(改正)하고, 동(同) 제5호(號) 말미(末尾)에 아래[左]와 같이 추가(追加)함.

바 포장(包裝)의 종류(種類)는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을 청구(請求)한 경우를 제(除)하고 아래[左]의 기호(記號)로써 기입(記入)함을 득(得)함.

포 장(包裝)	기 호(記號)
간단한 꾸러미[安平包]	(3)
대[筵], 줄[菰] 또는 왕골로 싼[茣蓙] 꾸러미[包]	₹
볏짚으로 묶은 꾸러미(藁包)	3
새끼로 묶은 꾸러미[繩締]	3
틀로 짠 꾸러미[枠締]	②
요철식으로 묶은 꾸러미[板締]	②

통들이[桶入]	(3)
나무통들이[樽入]	
수하물 꾸러미[行李入]	•
캔들이[權入]	(
가마니들이(瓜入)	
고리짝으로 된 꾸러미[梱合]	3
옹기들이[甕入]	(3)
자루들이[俵入]	(3)
대바구니들이[籠入]	
상자들이[箱入]	❸)
포대들이[袋入]	(3)
포로 싸고 쇠테로 묶은 꾸러미[布包帶鐵締]	3
대발로 묶은 꾸러미[簣卷]	3

제16조(條)제1항(項) 중(中)「매개양단(每箇兩端)」의 아래[下]에「(외형[荷麥]이 동일한 화물로서 1구[口]에 상당(相當)하는 개수[箇數]를 넘은 것은 매개[每箇]당[當] 1단[端])」을 추가(追加)하고, 동(同) 항(項) 제3호(號)의 나의 행(行) 중(中)「(화물운송장[貨物運送狀] 표면[面] 초필(初筆)의 품명[品名])」을「(화물운송장[貨物運送狀] 표면[面] 초필(初筆)의 품명[品名], 화물운송장[貨物運送狀]의 제출[提出]을 요(要)하지 아니한 것에 있어서는 주된 화물[貨物]의 품명[品名])」으로 개정(改正)함.

제20조(條) 화물(貨物)의 운송(運送)을 인수(引受)하거나 또 그 인도(引渡)를 받은 때는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을 발행(發行)한 경우를 제(除)하고 화물운송통지서(貨物運送通知書)를 송하인(送荷人)에게 교부(交附)함.

제26조(條)제1항(項) 중(中) 「광궤선(廣軌線)에 있어서는」을 삭제(削除)하고 동(同) 항(項) 제2호(號) 중(中)「12척(尺)5촌(寸)」의 아래[下]에「(협궤선[狹軌線]에 있어서는 6척[尺])」을 추가(追加)함.

제36조(條) 화물(貨物)은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을 발행(發行)한 경우를 제(除)하고 수령인 (受領印) 또는 수령증(受領證)을 정수하고 이 인도(引渡)를 함.

(주[註] 1)세칙(細則) 제71조(條)부터 제76조(條)까지 참조(參照)

(주[註] 2)수하인(受荷人)이 인장(印章)을 휴대(携帶)하지 아니한 경우는 서명(署名) 또는 손도장[拇印]으로써 이것을 대신(代身)하는 것을 득(得)함으로 함.

제53조(條)제3항(項)의 말미(末尾)에 아래[左]와 같이 추가(追加)함.

단, 제26조(條)제2항(項)에 의(依)해 다른 화물적재화차(貨物積載貨車)를 유차(遊車)1)로 대용(代用)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當該) 유차(遊車)의 표기하중(標記荷重) 톤수(ton·噸數)는 이것을 가산(加算)하지 아니함.

제54조(條) 제26조(條)에 의(依)해 두 차[二車] 이상을 사용하여 적재(積載)한 장척화물(長尺貨物)²⁾의 운임계산(運賃計算) 최저(最低) 톤수(ton·噸數)는 각(各) 사용화차(使用貨車)에 대한 것의 합계(合計)로 함.

전항(前項)의 경우에 있어서 유차(遊車)를 사용(使用)한 경우는 당해(當該) 화차(貨車)에 대한 운임계산(運賃計算) 최저(最低) 톤수(ton·噸數)는 13톤(ton·噸: 소형화차[小型貨車]에 있어서는 11톤[ton·噸])으로 해서 이것을 계산(計算)함. 단(但) 제26조(條)제2항(項)에 의(依)해 다른 화물적재화차(貨物積載貨車)를 유차(遊車)로 대용(代用)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當該) 유차(遊車)에 대한 운임계산(運賃計算) 최저(最低) 톤수(ton·噸數)는 전항(前項)의 사용화차(使用貨車)에 대한 운임계산(運賃計算) 최저(最低) 톤수(ton·噸數)에 이것을 가산(加算)하지 아니함.

제59조(條)제1항(項) 중(中) 「30입방척(立方尺)」을 「40입방척(立方尺)」으로 개정(改正)함.

¹⁾ 역자: 큰 짐을 여러 차(車)에 걸쳐 실을 때, 중간에 끼어 짐 무게를 받지 않는 차.

²⁾ 역자: 영화필름직물류 등의 길이가 보통보다 긴 것. 또는 그 물건.